

의안번호	제 204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 육성 및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미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위해 비상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시행(안 제4조)
- 미래자동차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안 제5조~제8조)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업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 수탁자등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미래자동차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그 소재·부품의 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
4.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이를 활용하여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

5. 그 밖에 산업융합(「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융합을 말한다)의 성과 또는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을 말한다)이 적용된 자동차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미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미래자동차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미래자동차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신기반기술 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2.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시제품 및 신상품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3.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4.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5.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술인력 양성,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및 시험·인증 지원
6. 기업 유동성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금 융자 등 지원
7. 미래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친환경자동차의 연구, 인프라 조성 및 운영
9. 친환경 스마트자동차로의 업종전환 유도 및 기업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상호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충청북도 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6월 30일 이후 처음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발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체계 수립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조문을 신설 및 변경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4조(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 안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4. 비용 추계결과

추계의 전제	추계 결과	재원조달방원
계	200,000천원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000천원	- 도비 100,000천원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100,000천원	- 도비 100,0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	20,000	120,000	20,000	20,000	200,000
충청북도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	-	100,000	-	-	100,000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0,000	20,000	120,000	20,000	20,000	200,000
	세외수입	20,000	20,000	120,000	20,000	20,000	200,000